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4-54호

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

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1(개포동 138번지) 지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5. 21.

강 남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강남구 삼성로 11(개포동 138번지)
4. 정비구역의 면적 : 64,293.80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장영수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강남구 삼성로 11(개포동 138번지)
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8. 사업시행인가일 : 2014. 5.21.
9. 사업개요

가. 대지면적 : 57,329.80㎡ 나. 건 폐 율 : 19.62%

다. 용 적 률 : 249.96% 라. 높 이 : 106.55m

마. 용 도 : 아파트 23동 1,3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바. 규 모 : 지하3층, 지상33층, 연면적 232,847.31㎡

10.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(기부채납) 대상

종 류	규 모(㎡)	시 행 자	비 고
도 로	2,492.11	조 합	
공 원	4,471.90	조 합	-
합계	6,964.01		-

1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 사항
    - 「주택법」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    -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,
12.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(☎02-3423-6063)에 비치 보관